복지정책실 민간위탁 및 예산 전용 보고

1.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2. 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- 3.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
- 4. 장애인보조기구(휠체어 전용가방) 교부 예산 전용 보고

1.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□ 시설개요

○ 위 치 :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

○ **시설규모** : **대지 29**,583*m*², 면적 3,138.5*m*²(지하1층, 지상4층)

○ **이용대상**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에 따른 수급자(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)

○ 위탁기간 : 2016. 1. 20. ~ 2021. 1. 19.

○ 운영법인 :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

□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
-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- 「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」('19.12. 복지정책과)
- 추진경위 : 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('20.9월)

주요내용

○ 위탁기간 : 2021. 1. 20. ~ 2026. 1. 19.(5년)

○ 위탁사무

- 노인요양시설 관리 및 운영,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상담·기능회복·지역복지사업
- 기타 노인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
- 사업예산('20) : 495,516천원(시비 100%)
- 선정방법 :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(10.29.) 후 재계약 결정

□ 향후계획

○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 및 공증 : '20. 12월

2. 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□ 시설개요

○ 위 치 :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99

○ **시설규모** : **대지 21.804***m*². **면적 3.573.5***m*²(지하1층~지상3층)

○ 이용대상 : 서울시 거주 65세이상 건강하신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

○ 위탁기간 : 2016. 3. 5. ~ 2021. 3. 4.

○ 운영법인 : 사회복지법인 가톨릭사회복지회

□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(시설의 위탁)
 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리운영의 위탁)
- ○필요성
 -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전문 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

□ 주요내용

- 위탁기간 : **2021**. **3**. **5**. **~ 2026**. **3**. **4**.(5년)
- 위탁사무
 - 입소노인 및 시설의 안전관리,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,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
- **사업예산**('20) : **1,597,506천원**(국비 572,682천원, 시비 1,024,824천원)
- 선정방법 :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(10.29.) 후 재계약 결정

□ 향후계획

○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 및 공증 : '20. 12월

3. 번동코이노니이장애인보호작업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

□ 시설개요

○ **위** 치 : **강북구 한천로 115길 20**(주공APT 501동 2층)

○ 시설규모 : 면적 551.9 m²(2층)

○ **이용현황** : 장애인 32명(근로17, 훈련15), 종사자 6명

○ 위탁기간 : 2016. 9. 5.~2021. 9. 4.

○ 운영법인 :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

□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
 -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 - 「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」('19.12. 복지정책과)
- 재위탁 사유 : 동일한 수탁법인이 위탁 및 재계약을 통해 10년간 시설을위탁 운영한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추진
- 추진경위: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 민간위탁 재위탁
 추진계획 수립(20.10.)

□ 주요내용

- 재위탁 기간 : 2021. 9. 5. ~ 2026. 9. 4.(5년)
- 위탁사무
 -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, 장애인고용 및 유지 등 장애인일자리 창출 사업
 -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
- **사업예산**('20) : **369**,474천원(시비 100%)

□ 향후계획

-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공개모집: '21. 3월
- 협약·계약심사 및 협약체결 : '21. 6월

4. 장애인보조기구(휠체어 전용가방) 교부 예산 전용 보고

□ 추진배경

○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구 (휠체어 전용가방)를 보급코자 함

□ 사업개요

○ **수행기관** : **서울시보조기기센터 4개소**(동남, 동북, 서남, 서북)

○ 사업대상 :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 장애인(500명)

※ 2020. 10월 교부 완료

□ 전용금액 및 사유

○ 전용금액: 100,000천원

○ 전용사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53조(자립생활지원) 및 제18조(의료와 재활치료)에 의거 장애인 보조기구 보급 가능
- 휠체어용 가방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이 민간위탁사업비로 되어있어 보조기구 보급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필요
 - * 민간위탁 사업비는 자본적 기기구입비로 대여만 가능

(단위 : 천원)

정책 사업	단위 사업	세부 사업	통계목	예산액	전용금액		변경 후
					증	감	예산액
장애인 자립생활기 반 조성	장애인 자립생활 지원	서울시 보조기기 센터 운영	(100-307-05) 민간위탁금	1,286,544	100,000		1,386,544
			(100-402-03) 민간위탁사업비	418,000		100,000	318,000

□ 향후계획

○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: '21. 1월